

공 고

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-619호

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관련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 171-1번지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.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3월 26일
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6. 3. 26. ~ 2026. 4. 9.(14일)

나. 공람장소 : 조합사무실 및 구로구청 주택과

다. 공람내용

1)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소규모재건축사업
- 명칭 :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
2)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치 : 구로구 공동 171-1번지
- 면적 : 6,942㎡

3)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착수예정일 : 2025년 9월
- 준공예정일 : 2029년 11월
- ※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4)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

- 명칭 :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김지근)
-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265, 304-1호

5) 변동사항

○ 조합임원 변경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조합임원(1인)	이사	사임	사직서 제출

○ 조합 정관 내용 변경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조합정관	제5조(시행방법) ①~③ (생략) ④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할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 한다)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5조(시행방법) ①~③ (생략) ④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로구청장 또는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로구청,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조합을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시행방법 변경